

##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(공시송달)

「보험업법」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, 과태료 금액,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4월 9일

금융위원회

### 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 명/기관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
보험설계사 유진상	790816-*****	전라북도 군산시 현충로

### 2. 서류의 명칭 :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

### 3. 서류의 내용 :

#### 가.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

처분 대상자	처 분 원 인	근거 법규	처분내용
보험설계사 유진상	케이지에이에셋(주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유진상은 2014.9.4.~2014.11.6. 기간 중 생명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○○○에게 동부생명보험(주) '(무) 연금Plus변액적립보험(1404)' 등 2건(초회보험료 12백만원)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7.4 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99조, 제209조	과태료 140만원

#### 나. 유의사항

- 위반사실,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,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,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.
-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,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.

4.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2100-296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